

2023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399
----------	------

제출일자 : 2023. 11. 13.

제 출 자 : 달성군



1. 제안사유

○ 주민공동이용시설 눈꽃마실터 조성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눈꽃마실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 공동체 활동의 거점시설로 운영하고
- 주민 화합과 세대간 소통을 장려하고 마을기업 사무실 설치로 마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공동이용시설 눈꽃마실터 조성

- 사업명 : 주민공동이용시설 눈꽃마실터 조성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902, 902-2번지
- 사업기간 : 2023. ~ 2026.(4년간)
- 면적 : 건축면적 196.38㎡, 연면적 744.12㎡
- 주요시설 : 쉼터 및 마을기업 사무실 등

위치	시설	연면적(㎡)	비고
1층	눈꽃 스토리룸	68.4	마을역사 전시
	마실터 관리실	14.58	-
2층	할아버지 도란터	42.84	-
	할머니 도란터	78.66	-
	공유 부엌	52.92	-
3층	건강돌봄실	101.07	-
	마을기업 사무실	32.67	-
4층	눈꽃 어울마당	131.04	다목적 강당
	집기 보관실	22.68	-

- 총사업비 : 44.79억원(국비 22.4억원, 시비 11.2억원, 군비 11.19억원)
- 부지매입비 7.04억, 조성공사비 33.58억, 설계감리비 0.92억, 부대비 2.25억, 마을 아카이빙 1억

※ 기준가격(대장가격)

- 토지(공시지가 × 면적) : 278,935,000원
- 건물(개별주택가격) : 92,200,000원
- 건물 신축(사업비) : 3,727,000,000원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m²,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비고
		건수 (필지/동)	면적	금액	건수 (필지/동)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 득	계				3 (4)	1,461	4,098,135	3 (4)	1,461	4,098,135	
	1.매입	토지			1 (2)	341	278,935	1 (2)	341	278,935	
		건물			1 (1)	376	92,200	1 (1)	376	92,200	
	2.교환	토지			-	-	-	-	-	-	
		건물			-	-	-	-	-	-	
	3.기타	토지			-	-	-	-	-	-	
건물				1 (1)	744	3,727,000	1 (1)	744	3,727,000	신축	

2023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종 류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토지)	전	전	회원읍	설화리	902	276	276	225,765,000	2023.11.	눈꽃마실터 조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3731-01155	설화동 번영회	
	대	대	회원읍	설화리	902-2	65	65				53,17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3731-01155	
2 (건물)			회원읍	설화리	902	376.2	376.2	92,200,000 (개별주택가격)	2023.11.	눈꽃마실터 조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3731-01155	설화동 번영회	
3 (건물)			회원읍	설화리	902	744.12	744.12	3,727,000,000 (사업비)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3731-01155	설화동 번영회	

위 치 도

【주민공동이용시설 눈꽃마실터 조성(안)】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902, 902-2번지



현 장 사 진

【주민공동이용시설 눈꽃마실터 조성(안)】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902, 902-2번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 9. (생략)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삭제)
-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④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1건당 기준면적”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
 -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
 -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